

「SU-GLORY 우수교원 선정 세칙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1. 1. 22. 제정 판 (시행 2021. 3. 1.) → 2022. 1. 17. 개정 판 (시행 2021. 9. 1.)

바뀜 1 · 신설 3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461/compare?from=1189&to=1291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2. 오후 1:12:16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시상종류 및 인원) 우수교원상은 우수교육자, 우수연구자, 우수봉사자로 구분하여 시상하며, 시상 인원은 부문별 세부기준에 따른다.	제3조(시상종류 및 인원) 우수교원상은 우수교육자, 우수연구자, <u>산학협력 우수자</u> , 우수봉사자로 구분하여 시상하며, 시상 인원은 부문별 세부기준에 따른다.
<신 설>	제21조(목적) 이 규정(지침)은 삼육대학교 산학협력 우수자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신설 2022-01-17>
<신 설>	제22조(대상 및 자격기준) <u>본교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시상하고 포상하며 다음의 각 항을 충족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.</u> ① 삼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② 최근 3년 동안 교외수탁 연구비, 기술이전 수입료, 기타 인정할만한 공로가 있는 산학협력활동 등의 간접비 총액 (산학협력단 귀속 금액 기준)이 5천만원 이상인 전임교원 <신설 2022-01-17>
<신 설>	제23조(선정 방법 및 선정자 포상) ① 산학협력단에서 간접비 총액 (산학협력단 귀속 금액 기준)이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. ②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대상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2인 이내로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이 최대 2인까지 최종 선정한다. ③ 매년 2월에 선정자에게 상장과 격려금(100만원)을 수여한다. 단, 최근 3년 이내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. ④ 실적산출은 협약일과 정보공시 기준을 따르며 당해 산학협력 우수자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. <신설 2022-01-17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SU-GLORY 우수교원 선정 세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"우수봉사자로"를 "산학협력 우수자, 우수봉사자로"로 한다.

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(목적) 이 규정(지침)은 삼육대학교 산학협력 우수자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(대상 및 자격기준) 본교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시상하고 포상하며 다음의 각 항을 충족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.

① 삼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

② 최근 3년 동안 교외수탁 연구비, 기술이전 수입료, 기타 인정할만한 공로가 있는 산학협력활동 등의 간접비 총액 (산학협력단 귀속 금액 기준)이 5천만원 이상인 전임교원

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(선정 방법 및 선정자 포상) ① 산학협력단에서 간접비 총액 (산학협력단 귀속 금액 기준)이 높은 순으로 대상을 선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.

②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대상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2인 이내로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이 최대 2인까지 최종 선정한다.

③ 매년 2월에 선정자에게 상장과 격려금(100만원)을 수여한다. 단, 최근 3년 이내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.

④ 실적산출은 협약일과 정보공시 기준을 따르며 당해 산학협력 우수자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